

2014년 4월 8일

앤드류 롭  
통상투자부 장관  
국회의사당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캔버라 2600

앤드류 롭 장관 귀하,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11장(투자)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유엔문서 A/CN.9/783)(“UNCITRAL 투명성 규칙”)의 향후 적용에 대해 이 협정 발효 후 12개월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NCITRAL 투명성 규칙은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윤상직

2014년 4월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민국 서울

윤상직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11장(투자)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간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유엔문서 A/CN.9/783)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향후 적용에 대해 이 협정 발효 후 12개월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NCITRAL 투명성 규칙은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랍니다.

앤드류 롱